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명 :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 조례	
제2조(정의) 2. “우편”이란 「우편법」에 따른 보통우편 및 등기우편(배달증명 우편을 포함한다)을 말한다.	제2조(정의) 2. <삭 제>
제8조(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) ① 납세자가 법 제26조에 따라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<u>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</u>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신 설>	제8조(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) ① -----제26조 제1항에----- ----- <u>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</u> ----- ----- 단, 구청장은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자가 기한 만료일 3일 전 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한의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다.
제9조(서류송달의 방법)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----- ----- <u>보통우편</u> -----.	제9조(서류송달의 방법)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----- ----- <u>일반우편</u> -----.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보통우편 송달부) <u>보통우편</u> 의 방법으로----- ----- <u>보통우편</u> 송달부는----- -----.	제10조 (일반우편 송달부) <u>일반우편</u> ----- ----- <u>일반우편</u> ----- -----.
제14조(미납구세 등의 열람) ① <u>미납구세</u> 의 열람신청은 임차인이 하여야 한다. 다만, 임차인과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가족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.	제14조(미납구세 등의 열람) ① <u>법 제64조에 따른 미납구세</u> 의 열람신청은 임차인이 하여야 한다. <삭제>
제17조(공탁 등) ①----- <u>공탁하거나 또는 구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.</u> 다만, 구 금고에 예탁할 경우 예탁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공탁하여야 한다.	제17조(교부금전의 예탁) ①----- <u>구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.</u> <삭제>
제18조(납기 전 징수와 압류) 법 제73조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변경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구세를 완납하지 아니하면 재산을 <u>압류할 수 있다.</u>	제18조(납기 전 징수와 압류) ----- ----- ----- <u>압류한다.</u>

현 행	개 정 안
<p>제19조(구세환급금의 충당 등) ① 법 제76조 제2항에 따라 구세환급금을 충당한 경우 납부일은 충당청구를 한 날에 환급한 것으로 본다.</p>	<p>제19조(구세환급금의 충당 등) ① 삭제</p>
<p>제22조(징수유예 등의 신청 및 처리) ① 세무공무원은 영 제67조 및 제68조에 ----- ----- -----</p>	<p>제22조(징수유예 등의 신청 및 처리) ① 세무공무원은 영 제80조 및 조례 제22조에 ----- ----- -----</p>
<p>제23조(징수유예 등의 취소) 법 제84조에 따라----- -----구세를 일시에 <u>징수하여야 한다.</u> 이 경우----- ----- <u>부과징수하여야</u> 한다.</p>	<p>제23조(징수유예 등의 취소) 법 제84조에 따라----- -----구세를 일시에 <u>징수할 수 있다.</u> 이 경우----- ----- <u>부과징수</u> 한다.</p>
<p>제24조(납세담보의 요구) 구청장은 법 제26조 제2항 및 제82조에 따라 납세담보를 요구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. 1. (생략) 2. (생략) 3. (생략)</p>	<p>제24조(납세담보의 요구) <삭 제>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25조(납세담보물의 보관) ① (생략) 1. 현금·유가증권의 <u>공탁수령증</u> 2. <u>국채·지방채의 등록필증서</u> 3.~ 5. (생략) 6. 토지·건물·공장재단·광업재단·선박·항공기 및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을 위한 <u>등기필증 또는 등록필증</u></p>	<p>제25조(납세담보물의 보관) ① (현행과 같음) 1. ----- <u>공탁영수증</u> 2. <u>국채·지방채, 사채의 등록확인증</u> 3.~ 5. (현행과 같음) 6. ----- ----- <u>등기필증,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확인증</u></p>
<p>제27조(조건부 채권의 압류)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최고를 한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에 대위하여 민사소송의 절차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. 다만, 채무이행의 <u>자력</u>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권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.</p>	<p>제27조(조건부 채권의 압류) ③----- ----- ----- ----- <u>자력(資力)</u>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8조(구세확정 전 보전압류) 법 제91조 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 확정 전에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한 날로부터 <u>3월</u> 이내에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며, <u>3월</u>이 경과하도록 납세 의무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.</p>	<p>제28조(구세확정 전 보전압류) ----- ----- ----- ----- <u>3개월</u>----- -----, <u>3개월</u>----- ----- -----.</p>

현 행	개 정 안
제29조(수색) ~ 제31조(참여자의 설정) (생략)	제29조(수색) ~ 제31조(참여자의 설정) <삭제>
제37조(공매처분 유보) ① 이의신청, 심사청구 또는 심판 청구가 접수된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법 제126조 제1항에 따라 압류재산의 공매처분을 유보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공매처분 유보기간 은 이의신청,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처분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.	제37조(공매처분 유보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보류 할 수 있다. ② ----- 보류기한 은 ----- ----- -----.
제39조(채납처분의 중지와 공고)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채납처분을 중지한 경우에는 일간신문·공보에 게재하거나 시·구 게시판에 10일간 공고하여야 한다.	제39조(채납처분의 중지와 공고) ③ ----- ----- ----- 1개월간 -----.

현 행	개 정 안
제45조(지방세 우선권의 확보) ② 납세자가 채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구세의 법정기일 1년 이내에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인과 전세권·질권·저당권 설정계약이나 가등기 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통정한 허위계약으로 추정되므로 즉시 법원에 해당 행위의 취소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, 해당 재산의 압류 등을 하여야 한다.	제45조(지방세 우선권의 확보) ② ----- ----- 법정기일 전 1년내 영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과 임대차계약,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계약, 가등기 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----- 서로 짜고한 ----- ----- -----.
제47조(지방세심의위원회) 법 제141조에 대한 사항을 ----- ----- -----.	제47조(지방세심의위원회) 법 제141조 제1항 각호 에 대한 사항을----- ----- -----.